

#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 9월 30일  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9 . 21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 9. 29
- 다. 상정일자 : 제7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9.29)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장하진)

### 가. 제 안 이 유

-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·임기·담당간사 등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 요 골 자

- 협의회 구성인원을 “10인이상 20인이하”를 “20인이상 30인이하”로 조정(안 제2조 제1항)
- 당연직 위원에 “제109 보병연대 1대대장”을추가(안제2조제2항제4호)
- 각 분야별 담당간사 변경(안 제2조제3항 제2·3·4·5호)
- 위촉인원의 임기를 “2년”으로 하고 연임 가능규정 신설(안 제2조제4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#### 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

-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(지역협의회 구성등에 관한조례기준) 제1항 법 제5조 제1항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법제5조 제1항의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 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
  - 1. 당해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  - 2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  - 9. 교육감 또는 교육장
  - 10. 지방의회 의장
  - 11.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.
- 상위법령에 의거 제109연대 제1대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현 구성인원 10인이상 20인이하를 20인이상 30인이하로 각각 10인씩 증원하는 것으로
- 원인을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증가와 담당간사의 업무세분화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.
- 담당간사의 업무를 세분화시켜 신속·정확한 업무추진을 도모 하였고 그간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금번에 반영한 것이고
- 아울러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토록 한 것은 조직 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(답변자 자치행정과장 장하진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위원 10인 이상을 증가시킨 이유는	○ 위원이 작전 자문에도 응하지만 위문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며, 위문도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임.

## 5. 토 론 요 지

-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은 현재 위원으로도 가능하며 현재 인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.

## 6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##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## 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**붙 임** :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  
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부

#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0년 9월30일

제안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-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은 현재 위원으로도 가능하며 현재 인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.

## 2. 수정주요골자

- 안 제2조제1항중 “위원 20인이상 30인이하”를 현행대로 “위원 10인이상 20인이하”로 수정

##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 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2조제1항중“위원 20인이상 30인이하”를 “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”  
로 수정한다.

## 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)①평창군통합방위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<u>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</u>로 구성하되,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2조(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)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원 20인 이상 30인 이하</u>-----</p>	<p>제2조(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)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</u>-----</p>

##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2항제4호중"제109보병연대3대대장"을 "제109보병연대 1.3대대장"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2. 민방위담당간사 : 자치행정과장

제2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3. 예비군담당간사 : 제109보병연대 1.3대대동원장교

제2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4. 작전담당간사 : 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, 제109보병연대 1.3대대 작전장교

제2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정보담당간사 : "평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", 제109보병연대기무반장

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

④제2항제5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부 칙 <2000. . . 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